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4. 7. 1.>

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착 공 신 고 서

· 어두운 난( 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일자 | 처리기간 3 일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인 | 건축주 | |
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

| | |
|---|---|
| 대지위치 | ① 지번 |
| 허가(신고)번호 | 허가(신고)일자 |
| 착공예정일자 | 준공예정일자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② 설계자 | 성명(법인명) (서명 또는 인) | 자격번호 | 협회 회원번호 |
| | 사무소 명 | 신고번호 | |
| | 사무소 주소 | (전화번호: ) | |
| | 도급계약일자 | 도급금액 원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③ 공사시공자 | 성명 (서명 또는 인) | 도급계약일자 | |
| | 회사명 | 도급금액 원 | |
| |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| 등록번호 |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 ) | |
| |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| 성명 | |
| | | 자격증 | 자격번호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④ 공사감리자 | 성명 (서명 또는 인) | 자격번호 | |
| | 사무소명 | 신고번호 | |
| | 사무소 주소 | (전화번호: ) | |
| | 도급계약일자 | 도급금액 원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⑤ 현장관리인 | 성명 (서명 또는 인) | 자격번호 |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 )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| [ ] 천장재 | [ ] 단열재 | [ ] 지붕재 |
| | [ ] 보온재 | [ ] 기타 | [ ] 해당 없음 |
|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| [ ] 대상 | [ ] 비대상 | |
| | 기관명 | 사업자등록번호 | |

| | 분야 | 자격증 | 자격번호 | 주소 |
|---|---|---|---|---|
| ⑥ 관계 전문기술자 | ( ) (서명 또는 인) | | | |
| | ( ) (서명 또는 인) | | | |
| | ( ) (서명 또는 인) | | | |
| | ( ) (서명 또는 인) | | | |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「건축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건축주)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| 신고안내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「건축법」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<br>2.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의 설계도서. 다만,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br>3.「건축법」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<br>4.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<br>5.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(산업안전보건법」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<br>없음 |

| 근거법규 | |
|---|---|
| 「건축법」<br>제21조 제1항 | ·「건축법」 제11조·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|

| 유의사항 | |
|---|---|
| 「건축법」<br>제11조 제7항,<br>제14조제5항,<br>제21조 제3항<br>및 제111조 제1호 | 1.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·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)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,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. 다만,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>2.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.<br>3.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. |

**작성방법**

1. ① 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2. ② ~ ④ : 변경되는 자가 다수인 경우 "○○○ 외 ○인"으로 적으며, "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
3. ③ 중 건설기술자 :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.
4. ⑤ : 「건축법」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.
5. ⑥ : 「건축법」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,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,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.

**처리절차**
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 수 | → | 검 토 | → | 결 재 | → | 신고필증 작성 | → | 신고필증 교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인(건축주) | |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건축허가·신고 부서) | | | | | | | | 신고인(건축주) |